<bof>

1. [%1](#1 법인세의 신고･납부)(#2 법인세의 신고･납부)(#3 Corporate tax declaration and payment)[n]
   1. [1](#1 법인세의 납세의무)(#2 법인세의 납부 의무)(#3 Obligation to pay corporate tax)[n]
      1. [2](#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2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3 Who is required to pay corporate tax?)[n]
         1. [3](#1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2 국내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3 Obliga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to pay corporate tax)[n]
            1. {1}(#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2 본점 등 회사의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 Corporations with their management place, such as the head office, in South Korea are obligated to pay corporate tax on all income generat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r4<n>,r5<n>}
         2. [4](#1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2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3 Oblig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to pay corporate tax)[n]
            1. {1}(#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2 본점 등 회사의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3 Corporations with their management place, such as the head office, in a foreign country are obligated to pay corporate tax only on income generated in South Korea as specified by law.){r3<n>,r5<n>}
         3. [5](#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2②))(#2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3 Clarification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oreign corporations")[n]
            1. [6](#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2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정)(#3 Regulations regard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oreign corporations)[n]

{1}(#1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2 법에서 정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3 The entities specified by the law are as follows.){r4<이 경우>,e6x1<n>}

* + - * 1. [6x1](#1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법인세법 세부규정)(#2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규정)(#3 Detailed regulations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oreign corporations")[T,e6<n>,e6x2<n>]

{1}(#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 =법에따라 설립된 법인)(#3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n}

{2}(#1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 =회사 설립 시 납입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3 =Organizations consisting solely of employees responsible for the amount deposited at the time of company establishment){n}

{3}(#1 =삭제 <2019.2.12>)(#2 =삭제)(#3 =Deleted){n}

{4}(#1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2 =그 밖에 해당되는 외국단체)(#3 =Other foreign organizations that meet the criteria){n}

* + - * 1. [6x2](#1 외국법인 판정기준 규정의 적용 시기)(#2 외국법인 판정기준 적용 시기)(#3 Timing of appl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oreign corporations)[n]

{1}(#1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2 2013.1.1부터 적용하며 세부내역은 국세청장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된 내용이 없습니다.)(#3 Effective from January 1, 2013, with detailed information that can be pu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Currently, there is no published information.){e6<n>,e6x1<n>,e6x2<n>}

* + 1. [7](#1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2 세금 납부의 근거가 되는 소득)(#3 Income serving as the basis for tax payment)[n]
       1. [7x1](#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2 매 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3 Tax on income generated annually)[n]
          1. {1}(#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2 매년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3 Tax is imposed on the income that corporations earn each year.){r7x2<n>,r7x3<n>,r7x4<n>,r7x5<n>}
       2. [7x2](#1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2 법인이 나눠지거나 합쳐지는 경우)(#3 When a corporation is divided or merged)[n]
          1. {1}(#1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단,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2 합병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에게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3 Corporate tax is imposed on income earned annually by corporations involved in mergers or divisions. If a corporation is dissolved, tax is imposed on income generated at the time of dissolution.){ r7x1<n>,r7x3<n>,r7x4<n>,r7x5<n>}
       3. [7x3](#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3 Tax on income generated from the transfer of land, etc.)[n]
          1. {1}(#1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2 주택, 투기용 토지, 분양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3 When selling properties such as houses, speculative land, and development rights, additional taxes must be paid.){ r7x1<n>,r7x2<n>,r7x4<n>,r7x5<n>}
       4. [7x4](#1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2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3 Corporate tax on income that corporations earn but do not distribute as investments, salaries, or dividends, and instead retain.)[n]
          1. {1}(#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2 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이 투자,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은 소득에 20%를 곱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3 If a corporation with a year-end equity exceeding KRW 500 billion has unused income, it must pay additional tax by multiplying 20% of the unused income.){ r7x1<n>,r7x2<n>,r7x4<n>,r7x5<n>}
       5. [7x5](#1 법인세법상 비과세 감면)(#2 법인세법상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3 Cases where corporate tax is not imposed or reduced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Act)[n]
          1. {1}(#1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2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은 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세금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3 Matters related to tax exemption or reduction are enumerated in the law, so the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before filing taxes.){ r7x1<n>,r7x2<n>,r7x3<n>,r7x4<n>}
    2. [8](#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2 법인 형태별 세금을 납부해야할 차이는?)(#3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ax payment based on corporate classification?)[n]
       1. [9](#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2 $(법인구분별 세금 납부 의무의 차이))(#3 $(Differences in tax payment obligations by corporate classification))[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 1. [11](#1 영리 법인)(#2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3 For-profit corporations)[n]
         1. [11x1](#1 영리법인의 정의)(#2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의 정의)(#3 Definition of for-profit corporations)[n]

{1}(#1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2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합니다.)(#3 It refers to corporations that are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seeking profits.){r9<n>}

* + - * 1. [11x2](#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부의무)(#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부의무)(#3 Oblig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n]

{1}(#1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2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는데,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3 For-profit corporations are divided into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Domestic corporations have an obligation to pay taxes on all income generat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eign corporations have an obligation to pay taxes only on income generated domestically.){r9<n>}

* + - * 1. [11x3](#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 토지 판매에 대한 세금)(#3 Tax on land sales)[n]

{1}(#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2 매년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 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3 In addition to the annual corporate taxes paid by corporations, when for-profit corporations or non-profit corporations sell land or houses for speculative purposes, they must pay additional taxes.){r9<n>}

* + - 1. [12](#1 비영리 법인)(#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3 Non-profit corporations)[n]
         1. [12x1](#1 비영리 법인의 정의)(#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정의)(#3 Defini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n]

{1}(#1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은 법에서 정한 법인이나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3 Non-profit corporations refer to entities defined by law as corporations or considered as orginizations.){e12x2<n>,r9<n>}

* + - * 1. [12x2](#1 국세기본법§13)(#2 국세기본법 제 13조)(#3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T,e12x1<n>,r9<n>,r12x3<n>]

{1}(#1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3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n}

{2}(#1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2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법인)(#3 =Corpor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School Act, with purposes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Article 32 of the Civil Act){n}

* + - * 1. [12x3](#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2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법인)(#3 Corporations that can distribute profits)[n]

{1}(#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2, 조특법§104의7).)(#2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법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봐야하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으로 봅니다.)(#3 "Corporations that can distribute profits" are considered for-profit corporations, but in the case of associations, they are considered non-profit corporations.){e13<n>}

* + - * 1. [13](#1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조합 등)(#3 Associations and similar entities considered as non-profit corporations)[n]

[14](#1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법§2, 법령§2))(#2 법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으로 규정한 조합)(#3 Associations specified by law as non-profit corporations)[T,e12x3<n>]

{1}(#1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2 =농협과 그 중앙회)(#3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ir central unions){n}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 =Consumer cooperative){n}

{3}(#1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2 =수협과 그 중앙회)(#3 =Fisheries cooperatives and their central unions){n}

{4}(#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2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3 =Forestry cooperatives and their central unions){n}

{5}(#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3 =Leaf tobacco production cooperatives and their central unions){n}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연합회)(#3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ooperatives and their federations){n}

{7}(#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 =신협과 그 중앙회)(#3 =Credit unions and their central unions){n}

{8}(#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3 =Saemaeul Savings Banks and their federations){n}

{9}(#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 =대한염업조합)(#3 =Korea Salt Manufacture Association){n}

[15](#1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특법§104의7②))(#2 법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으로 규정한 조합)(#3 Associations specified by law as non-profit corporations)[n]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2 정비사업조합)(#3 Redevelopment association){e12x3<n>,r14<n>}

[16] (#1 법인세법 기본통칙\* 2-0…3)(#2 법인세법 기본통칙)(#3 Basic principles of the Corporate Tax Act)[n]

{1}(#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2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익을 출자한 비율에 따라 출자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3 "Corporations that can distribute profits" refer to corporations with capital composed of shares and can distribute profits to shareholders in proportion to their contributions.){e12x3<n>}

* + - * 1. [18] (#1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2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3 Organizations considered as corpor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n]

[19](#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2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3 Organizations considered as corporations in default)[n]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봅니다.)(#3 When income is not distributed to members in the following cases, it is considered as a corporation.){e20<n>,r21<n>}

[20](#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부 규정)(#2 당연히 법인르 보는 단체의 세부 규정)(#3 Detailed regulations for organizations considered as corporations in default)[T,e19<n>,r21<n>]

{1}(#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국가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등록한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3 =Associations or foundations established with government permission but not registered yet){n}

{2}(#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납입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3 =Organizations with basic assets deposited for the purpose of public benefit but not registered yet){n}

[21](#1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2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3 Organizations considered as corporations with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n]

{1}(#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니다.)(#3 It is considered as a corporation after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d obtaining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e22<n>}

[22](#1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부규정)(#2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부 규정)(#3 Detailed regulations for organizations considered as corporations with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T,e21<n>]

{1}(#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3 =Organizations such as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that have regulations on their operations and appoint representatives or administrators){n}

{2}(#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2 =사단, 재단 등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우)(#3 =Organizations such as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that can own and manage property in their own name){n}

{3}(#1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2 =사단, 재단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주지 않아야 됨)(#3 =Organizations such as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that should not distribute income to their members){n}

[22x1](#1 법인으로 보는 기간)(#2 법인으로 보는 기간)(#3 Period for being considered as a corporation)[n]

{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2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년도를 포함하여 4년간은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승인 요건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자로 변경 가능함.)(#3 Once approved as a corporation, it cannot be changed to a resident status for four years, including the year of approval. However, in cases where the approval criteria are revoked, an exception may be made to change to a resident status.){e21<n>,e22<n>}

* + - * 1. [23](#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3 Profit-making businesses of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n]

{1}(#1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은 법에서 정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은 수익을 위한 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 법에서 정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3 Non-profit corporations are taxed on income generated from businesses specified by law, and non-profit corporations are only taxed on income from businesses specified as income businesses by law.){r9<n>}

* + - * 1. [24](#1 비영리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판매함에 따라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3 Obligation to pay tax on income generated from the sale of land by non-profit corporations)[n]

{1}(#1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2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도 투기목적의 토지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3 Non-profit corporations also have an obligation to pay taxes when selling land or houses for speculative purposes.){r9<n>}

<boe>